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35

발의연월일: 2024. 11. 27.

발 의 자:김교흥·정점식·윤재옥

이만희 · 최형두 · 서일준

배준영 • 한지아 • 김태선

소병훈 · 장동혁 · 임호선

정희용 • 백종헌 • 강선우

윤호중 의원(16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일본, 덴마크 등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줄여 온 다른 나라의 경우 자살이 개인의 문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살예방정책을 실행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냄.

이에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내용에 자살유발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자살빈발장소 지정 및 자살예방시설물 설치를 명문화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의 목적에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 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시·군·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8조).
- 라. 시·군·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곳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신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함"을 "조성하며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조성 14.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

제8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및 자살위험자 사례관리"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살예방시설물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이 반복

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 공공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빈발장소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제1조(목적)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	
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	
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u>조성함</u> 을 목적으로 한다.	<u>조성하며 자</u>
	살로 생명을 잃지 아니하는 사
	회를 실현하는 것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1.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와 사회환경의
	<u>조성</u>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14. 자살유발정보의 관리 방안
<u>14.</u> (생 략)	<u>15.</u>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시</u>
<u>·도지사는</u> 매년 기본계획에	·도지사, 시·군·구청장(자치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대한 무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 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u>시장·</u>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2. (생 략)
 -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u>시장</u> ・군수・구청장-----

-----<u>설치·운영하여야 한</u>다.

- 1. 2. (현행과 같음)
- 3. ------사후관리 및 자

4. ~ 7.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 살위험자 사례관리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자살예방시설물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 공공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빈발장소 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